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정문

사건번호: KR-0800025

신청인: 주식회사 케이티

피신청인 : 이종재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 이름

신청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남문기, 임재진,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피신청인: 이종재,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
한라그린피스 103/608

분쟁도메인 이름은 “megapasstv.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후이즈네트웍스, Yesnic.com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1101호)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8년 4월 11일 아시아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센터
(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한다)인 인터넷 주소 분쟁 조

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4월 11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년 4월 11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8년 4월 11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8년 4월 14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여 배달증명 우편상으로 2008년 4월 15일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8년 5월 5일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08년 5월 6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5월 6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5명의 조정인 후보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년 5월 7일 5명의 조정인 후보자로부터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았다.

2008년 5월 8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조정인 후보자 5명을 제공하였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조정인 후보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5월 13일 센터는 이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양당사자의 순위에 따라 서정일 조정위원으로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08년 5월 19일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08년 5월 19일 조정부에서 송부하였고 2008년 5월 20일 조정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08년 5월 21일 추가진술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조정부는 2008년 5월 29일까지 신청인측 추가진술서류에 대한 추가진술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29일 추가진술서류를 제출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megapass"에 대하여 데이터통신업 등 인터넷서비스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2002년 11월 29일, 2003년 1월 10일, 2003년 4월 1일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신청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케이블, 전화기,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상품과 데이터통신업, 통신사업, 텔레비전, 방송업 등의 서비스업에서 그 상표를 신청인의 서비스,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분쟁도메인 이름 <megapasstv.com>을 2006년 4월 15일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명의로 "megapass", 또는 "megapasstv"를 대한민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지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MEGAPASS"는 신청인의 주요 표장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 "MEGAPASS"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은 1990년대 말부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5월에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통합브랜드로 "megapass"를 출시하였다. 20006년 9월에 이르러는 국내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수 100만을 돌파하였고, 2008년 1월 현재 그 가입자 수가 650만 명이 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44.1%에 이르는 초고속 인터넷사업부문에서 최고 브랜드파워를 유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2004년 6월에 IPTV 서비스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TV포탈서비스를 "홈엔"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고, 2006년 9월에 그 브랜드 이름을 "megapass tv"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 7월에 이를 업그레이드하여 IPTV서비스 브랜드로 "mega tv"를 출시하였다. "mega tv"는 신청인의 브랜드 "megapass"와 "IPTV"를 합성하여 만든 명칭으로 신청인의 IPTV서비스 브랜드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3)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 <megapasstv.com>에서 gTLD인 ".COM"을 제외한 "MEGAPASS"는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표장인 "MEGAPASS" 및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인 "MEGA TV"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4)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개연성을 찾기 어렵고, 피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일인 2006. 4. 15. 전후 이 사건 이름을 사용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자라 볼 수 없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2006년 4월 15일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로 포워딩서비스를 하였다. 피신청인 거주지인 울산인구가 100만임에 비추어 울산시민 100만이 통하는 티비사이트를 만들기 위함이 본래 목적이었으며 그 시점에는 신청인이 IPTV를 출시한다는 내

용을 알지 못했다. 피신청인은 케이블TV 업계 종사자로서 이건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본다. "megatv"가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이 사건 도메이너의 이전 신청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이너의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이너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이너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이너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이너 "megapasstv.com"은 "megapass"와 "tv" 두 용어의 합성어로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서비스표 "MEGAPASS"와 비교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com"과 TV방송업 또는 IPTV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tv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도메이너의 요부는 "MEGAPASS"라 할 것이고 이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이자 표장인 "megapass"와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이너와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그 존재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피신청인

이 케이블TV 업계 종사자로서 당해 거주지인 울산인구가 100만임에 비추어 울산시민 100만이 통하는 티비사이트를 만들기 위함이 본래 목적이었음을 피력하면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었기에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정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된 바도 없고,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떠한 개연성이나 정당한 사업목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도 없기에, 일종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우선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UDRP 제4조의 해석상 “사용” 이란 반드시 도메인 이름을 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그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인 서비스표의 저명성,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와의 극도의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의 그 동안의 사용행태 및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분쟁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해결은 위 관련 규정과 규칙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신청인의 판단근거에 관한 주장은 이의 없다.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법률적 근거인 법원 판결의 주된 쟁점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적용될 규범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인 <megapasstv.com>를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 정 일

1인 조정부

결정일: 2008년 6월 9일